

# 평창군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및 지역근로자 우선고용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14
----------	-----

제출년월일 : 2019. 04.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1. 제안이유

평창군이 발주하는 공사·용역사업에 대하여 지역근로자 우선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지급 등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군민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함.

## 2. 주요내용

가. 적용 대상(안 제3조)

- 군이 발주하는 관급공사(공사·용역)

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 상생 협약(안 제5조)

- 대상사업 : 추정가격 10억 이상 공사
- 협약내용

△ 평창군 : 행정절차 최대한 지원·협조

△ 시공사

- 하도급 업체 선정시 지역 업체 우선 선정 등 지역 업체 참여 적극 협력
- 지역 전문건설업체와 지역 근로자, 장비, 자재 등 우선(최소 50% 이상) 고용·사용 노력

다. 군수, 수급인, 하수급인의 책무

- 임금 지불 서약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 제출(안 제6조)
- 임금 등의 지급상황 파악(안 제7조)
- 신고센터 설치 등(안 제9조)

라.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의 적용 등(안 제8조)

- 적용범위 : 공사기간 30일 이상이고, 추정가격 종합 2억, 전문 1억, 그 밖의 공사 8천만원 이상인 사업
-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활용하여 대가 지급(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 이루어지도록 규정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 1) 입법예고(2019. 2. 20. ~ 3. 12.) 결과, 제출의견 없음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 평창군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및 지역근로자 우선고용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이 발주하는 공사·용역사업에 대하여 지역근로자 우선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일자리 창출 촉진과 임금·건설기계 임대료의 체불을 방지하여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급공사”란 평창군(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포함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을 말한다.
2. “수급인”이란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공사·용역을 도급받은 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자를 포함한다.
3. “하도급”이란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공사·용역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5.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6. “지역근로자”란 근로자로서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7.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8. “일용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건설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를 말한다.
9. “임금”이란 사업주가 근로의 대가로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건설기계 임대료로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 체결하여 지급하는 기계 경비를 말한다.
10. “체불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 제36조와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지급되지 못한 임금과 건설기계를 사용한 후 미지급된 임대료를 말한다.
11. “공사감독자”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원 등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점검·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12. “건설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이하“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하도급 대금의 지연 지급과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고 적기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건설공사 대가를 지급할 때 수급인·하수급인·노무자 및 장비·자재업자에게 대금을 구분해서 지급하고 각 이해 당사자들이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전자적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군이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지역근로자 우선고용 등) ① 군수는 수급인에게 지역근로자 우선고용과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② 수급인은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의 4에 따라 지역 내 생산제품이나 장비 및 인력을 우선 사용하고, 체불 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경제 활성화 등 상생 협약) ① 군수와 수급인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은 제3조의 적용대상 중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제6조(수급인의 책무) ① 수급인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일용근로자, 건설기계근로자 및 그 밖의 근로자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제1항의 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관급공사 계약체결 시 임금 지불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 내역서(이하 “내역서”라 한다)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내역서에는 성명, 주소, 연락처, 금액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⑤ 수급인은 제4항에 따른 내역서의 총액과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이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수급인은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임금 등의 지급상황 파악)** ① 공사감독자는 제6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내역서를 바탕으로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내역서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의 적용 등)** ① 군수는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적용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1. 추정가격 2억원 이상인 종합공사
2.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3. 추정가격 8천만원 이상인 그 밖의 공사
4. 그 밖에 군수가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1. 민간투자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
  2. 각 이해당사자 간의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의 적용이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제1항에 따라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적용하는 공사의 경우 군수가 수급인에게 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이전에 이루어지는 수급인, 하수급인, 노무자, 장비·자재업자 간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의 지급에도 반드시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적용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발주된 공사를 계약한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⑤ 군수·수급인·하수급인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이 적절하게 지급되도록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센터 설치 등)** ① 군수는 근로자의 체불임금 등과 관련하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자료 등 요청)** 군수는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특수조건 반영)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공사·용역 계약 체결 시 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관급공사부터 적용한다.



##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상생 협약서(제5조 관련)

평창군이 발주한 ○○공사와 관련하여 평창군과 시공사는 지역 건설업계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당사자 간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 협력함에 동의하며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1. 평창군은 「○○공사」에 수반되는 행정절차에 대하여 최대한 지원·협조하여 건설업체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2. 시공사는 하도급업체 선정 시 지역 업체 우선 선정, 지역 업체가 포함된 공동하도급 등 지역 업체 참여에 적극 협력한다.
3. 시공사는 사업시행 기간 중에 지역 전문건설업체와 지역 근로자, 장비, 자재 등을 우선(최소 50% 이상) 고용·사용하도록 노력한다.

상기 협약사항을 상호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서명한다.

년 월 일

발 주 자	평창군수	(인)
시 공 사	○○건설 대표이사	(인)

## 임금 지불 서약서(제6조 관련)

우리 업체에서는 ○ ○ ○에서 발주한 관급공사에 대해 계약서 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평창군 정책에 따라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임금과 하도급 대금(건설기계임대료 포함)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배할 시 발주처의 처분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평창군수 귀하

# 관 계 법 령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을 그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어음만기일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준공금을 받은 경우: 하도급대금
2. 기성금을 받은 경우: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①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수요기관의 장이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 □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의4(지역내 생산제품·장비·인력사용의 권장) 군수는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내 생산제품이나 장비 및 인력의 우선 사용을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에게 권장할 수 있다.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 제1호

##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재무과장 이시균
연락처	(033) 330-2270